

보도시점 2024. 5. 1.(수) 조간  
2024. 4. 30.(화) 12:00

배포 2024. 4. 30.(화)

#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신규 모집 개시(5.1),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

- 34세 이하 청년 대상, '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-
-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~1440만 원 수령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5월 1일(수)부터 5월 21일(화)까지 3주간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.

일하는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~100% 이하)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,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.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. 3년 뒤 총 1440만 원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.

## <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>

대상 기준	(연령)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~34세 (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)
	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)
	(근로소득)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지원 내용	월 10만 원 본인 저축 + 30만 원(차상위 이하) + 10만 원(차상위 초과) 정부 지원
만기 수급액	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~ 1,440만 원 + 이자 등 수령 * (만기조건) ①근로활동 지속, ②교육 이수(10시간),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,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.

\* ('22년) 가입 4.2만 명 → ('23년) 가입 4.8만 명 → ('24년) 모집 4.4만 명(잠정)

올해부터는 청년층,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,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첫째, 가입 기준·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. 근로·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,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
둘째,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. 기존 군 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·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(2년, 만기 연장)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,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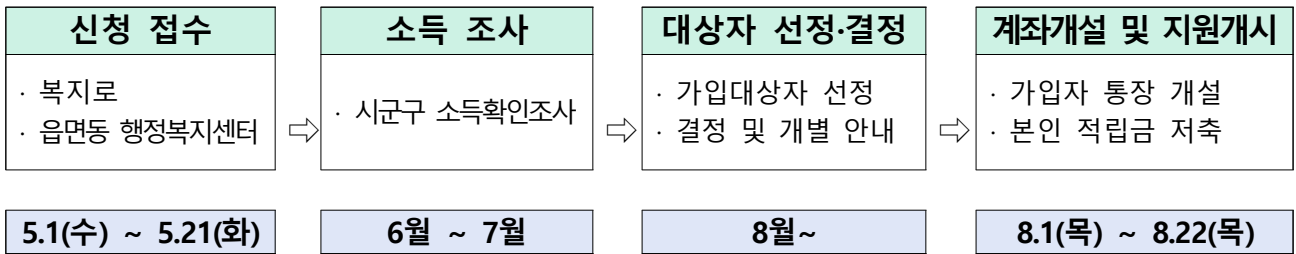
셋째,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.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,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.
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,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\*에서도 신청(5월 1일(수)부터)할 수 있다.

\* 복지로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, 자산형성포털([hope.welfareinfo.or.kr](http://hope.welfareinfo.or.kr))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

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.

<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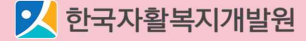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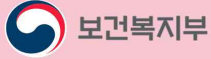
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 및 자산형성포털 (hope.welfareinfo.or.kr) 챗봇서비스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복지로(1566-0313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·안내받을 수 있다.

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(포스터)  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아 (044-202-30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웅 (044-202-3072)





같이키워DREAM

# 청년내일 저축계좌



## 3년 후 720 ~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
- **대상**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19세 ~ 34세 일하는 청년  
\*수급자·차상위자는 15세 ~ 39세
- **소득**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30만원 이하  
\*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
- **지원**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원  
\*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30만원 지원

모집일정

5월 1일(수) ~ 5월 21일(화)

접수처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/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\*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/ 대리 접수 가능(가구원 등)

사업안내



자산형성포털  
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



자산형성챗봇  
24시간 상담



복지로  
가입신청

관련문의
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## 붙임 2

##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

- (법적 근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8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
- (사업 목적)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- (지원대상)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)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
### <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>

대상 기준	(연령)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~34세 (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)
	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)
	(근로소득)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지원 내용	월 10만 원 본인저축 + 30만 원(차상위 이하) + 10만 원(차상위 초과) 정부지원
만기 수급액	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~ 1440만 원 + 이자 등 수령 * (만기조건) ①근로활동 지속, ②교육 이수(10시간),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< 참고: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('24년) >

(단위: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가입시 소득인정액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8,735
유지 기준*	차이하	4,714,657		5,729,913	6,698,735
	차초과	4,714,657			

※ 유지기준 근로소득 초과 시에는 초과 직전 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후 종료

- (가입기간) 3년 (군입대자 및 임신·출산·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)
- (지원내용)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 이상 필수, 최대 50만 원) 대비,  
-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30만 원,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
- (만기수급액) 3년 만기후 720만 원 ~ 최대 1440만 원 +이자 수급  
(본인 360만 원+정부지원금 360만 원 ~ 1080만 원)